공 개

| 의안번호 | 제 53 호 |
| --- | ---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6. 2. 25<br>(제4차) |

의결사항

#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| 제 출 자 | 위원장 권 대 영 |
| --- | --- |
| 제출<br>연월일 | 2026. 2. 25. |

## 1. 의결주문

한국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)가 승인 요청한 별지의 「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을 원안대로 승인한다.

## 2. 제안이유

□ 청산결제 대상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추가

## 3. 주요골자

□ 청산결제 대상 주권등의 정의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추가(안 제2조제1항)

## 4. 참고사항

가.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: <별지>

나.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: <별첨>

<별지>

#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1호 중 “투자회사 주권”을 “투자회사 주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”으로, “집합투자증권”을 “집합투자증권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”으로, “투자신탁 수익증권”을 “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첨>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2조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br>1. ~ 10. (생 략)<br>11. “주권등”이란 주권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은 제외한다), 외국주식예탁증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, 상장지수증권, 신주인수권증서, 신주인수권증권,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<br>12. ~ 13. (생 략)<br>② (생 략) | 제2조(정의) ① ----------.<br>1. ~ 10. (현행과 같음)<br>11. ---------- 투자회사 주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----------집합투자증권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, ----------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----------.<br>12. ~ 13. (현행과 같음)<br>② (현행과 같음)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금융위원회 |
|---|---|
| 소관부서 | 자산운용과 |
| 연 락 처 | 02-2100-2664 |